#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58

발의연월일: 2025. 4. 23.

발 의 자:이성권・김용태・이헌승

신성범・김 건・이달희

조은희 • 안상훈 • 김도읍

조승환 • 우재준 • 배준영

강명구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(드론)를 재해·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·구조, 화재의 진화, 응급환자 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간비행·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등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해·재난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고, 이를 위해 산 및 급경사지 등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를 무인비행장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순찰·감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동법 시행규칙에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로 규정되어 있는 재해·재난 등의 예방 활동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무 인비행장치가 각종 재해 및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31조의2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1조의2제2항 중 "등으로 인한"을 "등의 예방 활동 및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1조의2(무인비행장치의 적용	제131조의2(무인비행장치의 적용
특례) ① (생 략)	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	2
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	
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	
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	
재해·재난 <u>등으로 인한</u> 수색	등의 예방 활동 <u>및</u>
• 구조, 화재의 진화, 응급환자	
후송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	
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	
히 비행(훈련을 포함한다)하는	
경우(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	
련한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제	
129조제1항, 제2항, 제4항 및	
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